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07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무상대부의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4조)
- 나. 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 시기,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서류 및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 다.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기재사항 및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6조)
- 라. 적절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로 규정(부칙 제1조~제2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 전자우편 : mjkim33@korea.kr
- 팩스 : 044-201-4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전화 044-201-4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